

## 숙박 약관

### ( 적용 범위 )

- 제1조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적용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 ( 숙박 계약의 신청 )

- 제2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1) 숙박자명, 등록 주소 및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지나 계속 숙박하기 위해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3. 당 호텔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는 당 호텔이 별도로 규정한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에 근거하여 사용됩니다.

### (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제2조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셔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먼저 위약금에, 그다음으로 배상금에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해 드립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신청금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시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 신청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약 )

- 제4조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제3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설의 감염 방지 대책을 위한 협력 요청 )

제4조의 2.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분에게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제5조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거하지 않을 때
- (2) 만실(만원)로 인하여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 (다)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5)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한 민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6)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증 환자 등
  - (이하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일 때
- (7) 숙박과 관련한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됨)
- (8)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당 호텔에서 수용했을 시 그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 즉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규정된 요구를 반복했을 때
- (9) 보호자의 허가가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할 때
- (10)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11)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만취자 등이어서 다른 숙박객, 당 호텔 종업원에게 크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다른 숙박객, 당 호텔 종업원에 크게 민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도쿄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 (12) SNS 또는 인터넷 등에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당 호텔 종업원, 다른 숙박객에 대한 비방, 중상 등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했을 때

#### ( 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

제5조의 2. 숙박하고자 하는 분은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당 호텔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

- 제6조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객 자신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인하여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신청금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서 신청금을 지불하기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2에 열거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특약을 적용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 오후 8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이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

- 제7조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때
  - (다) 법인의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하게 민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4)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일 때

- (5) 숙박과 관련한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장애인 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됨)
  - (6) 숙박객이 당 호텔에서 수용했을 시 그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 즉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규정한 요구를 반복했을 때
  -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하여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8)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심한 민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때 (도쿄도 조례 인용)
  - (9)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 숙박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 )

제7조의 2. 숙박객은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당 호텔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숙박의 등록 )

제8조 1. 숙박객은 숙박 당일에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1) 숙박객 이름, 생년월일, 이전 숙박지, 목적지, 주소 및 연락처
  - (2) 외국인일 경우 국적, 여권번호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등록 시에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 ( 객실 사용 시간 )

제9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익일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할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 외에 다른 날은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표 제3에 규정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 이용 규칙의 준수 )

제 10 조 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 ( 이용 규칙의 준수 )

제 11 조 1. 당 호텔의 숙박 관련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릿, 곳곳의 게시물, 객실 안의 게스트 서비스 가이드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              |
|---------|--------------|
| 프런트     | 24 시간        |
| 벨 캡틴    | 24 시간        |
| 객실 담당   | 7:30 ~ 22:00 |
| (청소 의뢰) | 9:30 ~ 16:00 |
| 오퍼레이터   | 24 시간        |
| 룸서비스    | 6:30 ~ 24:00 |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 ( 요금 지불 )

- 제 12 조 1. 숙박객이 지불하셔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1에 열거한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화폐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출발하실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 때에 프런트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객실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시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을 받습니다.

### ( 당 호텔의 책임 )

- 제 13 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또는 이들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조치 )

- 제 14 조 1. 당 호텔에서 숙박객과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 드릴 수 없을 때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숙박객에게 지불하며, 이 보상금은 손해배상에 충당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당 호텔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가 아닐 때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 위탁물 등의 취급 )

- 제15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이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고지를 요구했으나 숙박객이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30만엔 한도로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안에 갖고 들어오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프런트에 맡기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단,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명확히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만엔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 제16조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객 도착 전에 당 호텔에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수하물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하실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아 있을 시,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당 호텔이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방법에 대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규칙【귀중품, 맡기신 물건, 분실물에 대해서】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고 전항의 경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 ( 주차의 책임 )

- 제17조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신 경우, 차 키를 맡기셨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드리는 역할만 하며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을 관리하다가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 ( 숙박객의 책임 )

- 제18조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 ( 숙박 약관의 변경 )

제19조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호텔의 재량으로 숙박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 약관 변경이 숙박객의 일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2) 숙박 약관 변경이 숙박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며,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타당성, 변경 내용 및 기타 변경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일 경우
2. 당 호텔은 전항에 따른 숙박 약관 변경에서 변경 후, 숙박 약관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까지 숙박 약관 변경 취지 및 변경 후의 숙박 약관 내용과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의 공식 웹 사이트 등에 게재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4월 1일에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                 |       | 내역   |
|-----------------|-------|--|
| 숙박객이 지불하셔야 할 총액 | 숙박 요금 | A 기본 숙박료(객실료)<br>B 봉사료(상기 A의 15%)                            |
|                 | 추가 요금 | C 음식 대금 및 그 외 이용 요금<br>D 그 외 숙박에 부수되는 요금<br>E 봉사료(상기 C의 15%) |
|                 | 세금    | 소비세, 숙박세   |

**별표 2** 취소료 · 위약금(제6조 제2항 관련)

|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         | 숙박 안 함 | 당일   | 전날  | 9 일 전 | 20 일 전 |
|----------------|---------|--------|------|-----|-------|--------|
| 계약 신청 인원수      | 일반      | 100%   | 80%  | 20% | -     | -      |
| 단체             | 10 명 이상 |        | 100% | 80% | 20%   | 10%    |

**별표 3** 규정 시간외의 객실 사용 추가 요금

<레이트 체크아웃 요금>

| 플로어    | 1 시간마다  | 15:00 이후 |
|--------|---------|----------|
| 스탠더드   | ¥ 2,200 |          |
| 프리미엄   | ¥ 4,400 |          |
| 이그제큐티브 | ¥ 6,600 |          |

<얼리 체크인 요금>

| 플로어    | 1 시간마다  | 11:00 이전 |
|--------|---------|----------|
| 스탠더드   | ¥ 2,200 |          |
| 프리미엄   | ¥ 4,400 |          |
| 이그제큐티브 | ¥ 6,600 |          |

( 참고 )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일수에 관계없이 하루치(첫날) 취소료(위약금)를 받습니다.
3. 단체객(10명 이상)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 10일 전(그날보다 나중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의 숙박 인원수의 10%(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단, 10명 미만이라도 단체로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리합니다.
4. 단체의 경우, 예약 접수 시에 제시하고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취소료가 우선시됩니다.
5. 당 호텔이 주최하는 일부 기획 상품에 대해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제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자에게 사전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